PC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

(PCFilter 설치 및 사용자 설명서)



2024. 2.

부 산 대 학 교 정 보 화 본 부

1. 프로그램 설치

- https://p3.pusan.ac.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PCFilter 프로그램을 다운받기(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.)

※ 대학자원관리시스템(PIP)에서 사이버보안진단 업무용 PC 대상을 현행화하시면 대상 PC에 PCFilter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.



2. 메인화면



[에이전트 메인화면]

① 에이전트의 주 메뉴 정보

- 메인으로 : 검사완료 화면이나 환경설정 화면에서 메인화면으로 이동할 때 클릭합니다.
- 환경설정 : 에이전트의 설정 상태를 변경합니다.
- 로그보기 : 에이전트 검사, 실시간 감시, 보호활동에 대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.
- 고객센터 : 에이전트 정보나 FAQ,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.
- ② 실시간 감시, 예약검사, 업데이트를 메인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전체검사를 클릭하면 PC 내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검사가 시작됩니다.
- ④ 선택검사를 클릭하면 검사설정에서 세부 조건을 설정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.
- ⑤ PCFILTER로 암호화한 파일들을 검색하고,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.

3. 검사설정

F PCFILTER V2.0	
¹ 검사설정	소 28 1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:♥ 컴퓨터 ⊕ 로컬 디스크 (C:) ⊕ 로컬 디스크 (D:) ⊕ 로컬 디스크 (D:) ⊕ DVD RW 드라이브 (E:) ⊕ ep_dept(₩₩118,217,217,120) (Y:	(2) [] 검사완료 후 시스템종료 ③ 검사 대상 문서 []> [] ③ 검사 대상 문서 []> [] ③ 중요문서(한글 @, MS-Office @, PDF) [] [] 일반문서(RTF, HWX, HWN, HWD, TXT, OpenOffice @) [] [] 입축파달(ZIP, ALZ, RAR, TAR, BZ, BZ2, 7Z, GZ, TGZ) [] [] 기타파일(HTML, XML, EML, MSG, SWF, MDB 등) [] ④검사 유형 선택 []> [] [] 주민번호 [] 외국인번호 [] 여권번호 [] 운전면허
< Ⅲ ► 개이정보 무서파일을 압호하하며 보관하게 나	□ 건강보험번호 □ 계좌/카드 □ 이메일 □ 휴대전화 □ 사업자/법인 □ 키워드 ⑤ 키워드 ② 파일 수정 일자 ⑥ □ 범위 설정 2014-06-07 + ~ 2014-07-08 + ⑦ □ 검사시작

[검사설정 화면]

- ① 디스크/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② 개인정보 문서검사 후 시스템을 자동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
- ③ 검사할 문서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④ 검사하고 싶은 개인정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⑤ 개인정보 외 검사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⑥ 파일이 수정된 일자 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.
- ⑦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검사가 시작됩니다.

4. 검사 후 보호활동

🕼 PCFILTER V2.0							_ × _
선택검사					11 11인으로 문	\$3	হা আৰ্থনা
파일 19,091 검출 150	총 19.091 개의 파일종 00:34:12	검사했습니다.			E]검사완료 # 100%	시스템종료
일반검을 기용	가경술 통계	8 암호화	■ 압축	이동	효 유지통	■완전식제	육겸사제외
		٩	0	3		6	6 E 4 1 1 4 2 2 10 5 1 4 1
개인정보 문서파일을 읽	암호화하여 보관하거나 삭제	합시다.					

[검사완료 화면]

- ① 암호화 : 정밀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.
- ② 압축 : 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비밀번호 압축하여 보관합니다.
- ③ 이동 : 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환경 설정에 지정한 폴더로 이동합니다.
- ④ 휴지통 : 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삭제합니다.
- ⑤ 완전삭제 : 정밀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완전삭제합니다.
- ⑥ 검사제외 : 검사를 실행하기 전 개인정보문서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



※ '완전삭제' 메뉴를 이용한 삭제 시, 삭제파일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.



[암호화하기, 비밀번호 압축하기]

※ 검사완료 화면에 검출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.

파일정보	1	파일정보	
파일명	위치	파일명	위치
테스트파일.hwp	C/파일유형별테스트파	테스트파일.hwp	C.\파일유형별테스트파.
		저장위치 *미 선택시	원론파일 위치에 저장 합니다.
저장위치 *미 선택사	원분파일 위치에 시장 합니다. 2 찾아보기	저장위치 * 미 선택시	원론파일 위치에 지장 합니다. 찾아보기
저장위치 *미 선택시 비밀번호설정 *비밀	원분파일 위치에 시장 합니다. 2 찾아보기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3	저장위치 *미 선택시 비밀번호설정 *비밀	원본파일 위치에 지장 합니다. 찾아보기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테막 바 중 재 양 편
저장위치 *미 선택사 비밀번호설정 *비밀 비밀번호 입력	원본파일 위치에 사장 합니다. 2 찾아보기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3 비밀번호 재입력	저장위치 * 미 선택시 비밀번호설정 *비밀 비밀번호 입력	원론파일 위치에 자장 합니다. 찾아보기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비밀번 호 재입력

[암호화하기, 비밀번호 압축하기 창]

- ① 암호화하려는 파일의 정보가 나옵니다.
- ② 암호화하기 창이 뜨면 저장위치를 찾습니다.
- ③ 저장위치를 선택하고 암호를 설정합니다.
 암호는 8~16자의 영문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(!@#\$%^&*())를 조합하여 입력합니다.
 (원본파일 보존하기를 체크하시면 원본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)

주의사항 ※ '암호화','비밀번호 압축' 입력 비밀번호 분실 시 해당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.

- ④ 암호화 진행 상태를 퍼센트로 표시합니다.
- ⑤ '암호화' 버튼을 클릭하면 암호화가 진행됩니다.※ 비밀번호 압축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
5. 환경설정

PCFILTER V2.0						_ >
환경설정				값 값 예인으로 환경	8	्र
④실시간 감시 >실시간 감시 정책	실시간 감시 정	책 Q. 성시간 김	?시가 실행 중입니	다.		
 2 개인정보 검사 설정 > 전체 검사 설정 > 간편 검사 설정 > 예약 검사 설정 	감시행위 ② 열기 감시대상 ③ 중요문서(한글] 저장(복사) 월, MS-Office 월	[]] 전송 (, PDF)			
 ③ 옵 션 > 검사 옵션 설정 > 검사 제외 설정 	 [1] 일반문서(RTF [1] 압축파일(ZIP, [1] 기타파일(중요 	, HWX, HWN, HW ALZ, RAR, TAR, 문서, 일반문서,	D, TXT, OpenOffi BZ, BZ2, 7Z, GZ 압축파일을 제외한	ce 😫) Z. TGZ) 1 특정파일 감시 😫)		
▶기본 옵션 설정 모두 기본값 설정	감시유형 ▶ ⑦ 주민번호 ◎ 계좌/카드	🗐 외국인번호 🛅 이메일	🗐 여권번호 🗐 유대전화	🗐 운전면허 🗐 사업자/법인	· 건강보험번 기본 값	호 적용

- ① 실시간감시정책 : 실시간감시 ON/OFF 및 감시행위, 대상, 유형을 설정합니다.
- ② 개인정보 검사 설정
 - 전체 검사 설정 : 검사 시 검사 할 문서와 유형을 선택하고, 개인정보 포함 개수를 설정할
 수 있습니다.
 - 간편 검사 설정 : 간편 검사 시 검사 할 문서와 유형을 선택하고, 개인정보 포함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- 예약 검사 설정 : 예약 검사 사용 시 설정한 예약된 시간에 자동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.

- ③ 옵션
 - 검사 옵션 설정 : 모든 검사에 적용할 주민번호 검출단계설정, 검사제한 파일용량, 다중압축
 단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
 - 검사 제외 설정 : 모든 검사 시 제외 설정된 파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.

(주로 오검출 파일을 설정합니다.)

- 기본 옵션 설정 : 검출된 파일을 따로 저장할 폴더설정과, 로그보관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관련 근거

[개인정보 보호법]

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(이하 생략)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① ~ ② (생략)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** (이하 생략)

제75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21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5. 제23조제2항·제24조제3항·제25조제6항(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)·제28조의4제1항·제29조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**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** (이하 생략)